

##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수칙 기준: 또 다른 데자뷔인가?

콜린 고 (R.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 국방전략연구소 연구원)

최근 아세안이 주도하여 8월 초 마닐라에서 몇 차례 열린 회의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기대감 어린 긴장감을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종식시켰다. 앞으로 약 1년 간 아세안과 중국은 행동수칙 공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수칙의 공포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어떤 형태로든 궁극적으로 구체화될 행동수칙은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역할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본적인 의제는 여전히 다를 것이다. 한편으로 아세안은 아시아 태평양 안보 구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보여지기를 원한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과거 행위로 인해 세계 언론을 통해 나쁜 평판을 얻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묘사되기를 원하고 있고 아세안과의 행동수칙 협상과정에서 분쟁에 대한 역외 간섭을 차단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행동수칙은 어느 국가든 — 당사국이든 아니든 —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허점투성이의 합의안이 될 것이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군비 통제의 역사는 행동수칙과 같은 기제가 지리적 범위뿐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의 범위도 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어느 불특정 해상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적, 전략적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국제해역인 남중국해이다. 남중국해의 일부 영역만 선택적으로 수칙에 포함시키거나 협상당사자를 선택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 수칙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할 것이다.

## 목 차

1. 역사는 반복된다?
2. 남사군도(Spratly Islands)에만 행동수칙 적용?
3.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
4. 역외 국가의 개입
5. 대만—잠재적 외일드 카드?
6. 앞에 놓인 길

**아세안과 중국은  
행동수칙 공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수칙의  
공포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

- 최근 아세안이 주도하여 8월 초 마닐라에서 몇 차례 열린 회의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기대감 어린 긴장감을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종식시킨. 공동성명의 문구에 대한 내부적 실랑이를 거친 후,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공동성명<sup>1)</sup>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은 남중국해에서의 토지간척과 군사기지화와 같은 행동에 대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음으로써 외교적 후유증을 피할 수 있었고, 분규수역의 긴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몇 년 전에 제안된 행동수칙(Code of Conduct)기준<sup>2)</sup>을 중국과 아세안이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길을 보장함
- 앞으로 약 1년간 아세안과 중국은 행동수칙 공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수칙의 공포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음. 역사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는다면, 협의를 좌초시킬 수 있는 긴장이 다시 남중국해에서 고조될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음. 아세안과 중국이 2002년 11월 획기적으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에 서명한 후,<sup>3)</sup> 이 결과에 대한 엄청난 낙관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을 회고해보자면, 이 선언은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다시 고조된 후, 특히 분쟁수역에서 여러 영유권 주장국들이 수많은 공사와 기존시설 보강행위로 긴장을 고조시킨 후 나온 것임. 여기에는 1990년대에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팡가니방 산호초(Mischief Reef)를 중국이 점거하고, 시설물을 건축한 행위도 포함
- 사실, 원래의 의도는 행동수칙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나, 이후의 중국-아세안 회담은 많이 약화된 형태인 당사국 행동선언(Declaration of Conduct)으로 이어짐. 그러나 아세안과 중국 양자에게 이 선언의 조인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나타내는 것임. 아세안은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구축과 관련하여 이 선언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려 노력. 따라서 이 선언은 최종적인 수칙을 만들어가는 전 단계로 여겨짐.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고위급 협의는 계속 지연. 행동수칙에 관한 협의가 맥없이 지연되는 동안 2009년 이후 긴장은 고조되었고, 2012년 4월 중국과 필리핀 간 스카버러 섬(Scarborough Shoal)사건이 발생했고, 뒤이어 남중국해에 대한 최초의 공동성명이 무산되었고, 필리핀은 이 분쟁과 함께 중국의 대대적인 남중국해 인공섬 건축과 군사기지화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

### 1. 역사는 반복된다?

- 행동수칙 기준 제정 이후의 상황은 과거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큼. 낙관

적 전망이 사라지면, 아세안과 중국이 행동수칙의 복잡한 현실 문제로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음. 여러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행동수칙 기준은 지리적 영역을 확정하지 못했고 그 수칙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도 지속되고 있음.<sup>4)</sup> 낙관론자들은 모든 당사국들의 선의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여 결국 수칙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임. 사실, 제안된 행동수칙은 군축을 위한 기제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음. 군축용어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구조와 작전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전자는 무장의 유형과 양에 제한을 두는 반면, 후자는 질적 또는 양적 제한에 관계없이 무기가 배치되는 방식에 관련됨.<sup>5)</sup> 행동수칙은 남중국해의 11개 당사국의 활동에 관계된 것이므로, 무기의 유형 및 수량이 아닌 작전 통제권 범주로 분류됨

- 그러나 군축 협상의 역사를 탐구해보면, 행동수칙 협상에 놓여 있는 도전과제를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음. 그러한 회담은 많은 당사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렁에 빠져드는데, 당사자가 많을수록, 협상해야 할 일련의 국가 이익은 복잡해지고 다양하며 서로 상충됨.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수칙을 구체화하는 것은 가능한 일임. 유일한 질문은 행동수칙이 최종적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되는 데 얼마나 걸릴 것인지 그리고 그 범위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관련되어 있음. 역사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었듯이, 긴장이 반복되면 협의과정은 더 급속히 촉진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이것은 또한 최종 결과가 분쟁 수역의 모든 당사자들의 행동을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행동수칙 구상에서 몇 가지 잠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함

## 2. 남사군도(Spratly Islands)에만 행동수칙 적용?

- 첫째, 군사활동과 그러한 활동이 남중국해상에서의 작전과 전략에 미치는 잠재적 파급효과를 일부 선택된 영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스카버러 섬 및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는 행동수칙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 둘은 남중국해 안에서 “긴장감이 높은” 분쟁지역의 일부임. 스카버러 섬의 현 상황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중국과의 화해를 선호하는 친중 외교정책에 따라 긴장이 완화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그러나 두테르테 정부 이후에는, 두테르테의 정책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정반대의 정책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후자의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베이징은 앉아서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행동수칙 기준은  
지리적 영역을  
확정하지 못했고  
그 수칙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도  
지속되고 있음**

**군사활동과  
그러한 활동이  
남중국해상에서의  
작전과 전략에 미치는  
잠재적 파급효과를  
일부 선택된 영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고려해야 할****두 번째 쟁점은****행동수칙이 법적으로****구속력이 있는지의****여부**

것임. 2016년 7월의 중재 판정—중국이 필리핀과 아세안을 설득하여 2017년 8월 공동성명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에 근거한 영유권 주장을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는 두테르테 이후 차기 정부의 정책 변경,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은 필리핀 어부의 섬 접근을 거부하거나<sup>6)</sup> 섬 자체에 시설구축과 같은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sup>7)</sup> 그렇다면 이는 반드시 행동수칙을 좌초시킬 것임

- 주변 해역이 중국 석유굴착 기지 HYSY981을 둘러싼 2014년 5~7월의 다투과 같은 중국과 베트남 간 대립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파라셀 군도를 제외하는 것은 잘못. 남사군도 영역 내 점령 도서의 본토 근접성과 이들 지역의 상호지원 역할을 고려할 때, 어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해역에서 위기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분쟁 당사자 간의 새로운 적대 행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이 남쪽으로 군사기지화를 확대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무장조치를 확대하는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것은 또한 발단이 중국과 베트남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이 지역의 다른 영유권 당사국을 자극하여 무장을 강화하는 연쇄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3.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

-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쟁점은 행동수칙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의 여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수칙은 문서 내에 포함된 조항의 준수, 검증 및 집행을 의미함. 첫 번째로, 수칙준수는 문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각 당사자의 자제력에 크게 의존함.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 행동수칙에 불응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임. 점령 지역의 군사화가 “방어 준비”라는 이름으로 계속 정당화될 것인가, 남중국해에서의 그러한 활동이 규범에 따른 선의의 행동이라는 것을 당사국들이 편견을 최소화하거나 편견없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당사국들 중 어느 한쪽이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징벌조치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아세안은 이 수칙의 중재자가 될 수 없고, 중국이 분쟁을 국제문제화하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유엔과 같은 지역 외 기구와 세계기구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sup>8)</sup>

#### 4. 역외 국가의 개입

- 마지막으로 행동수칙과 관련 없는 국가는 어떤가를 살펴보고자 함. 행동수칙 체제는 중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이외의 다른 국가의 서명국 역할을 상정하지 않음. 그리고 이것이 문제를 다시 어렵게 만드는 것임. 남중국해는 전 세계 해운 물동량의 약 1/3이 통과하는 국제수역임.<sup>9)</sup> 예를 들어, 인도양에서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주요 아시아 경제대국으로 가는 에너지 무역로는 남중국해를 통과해야 함. 중국은 남중국해를 우회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키스탄을 통과하는 육로를 개척하기 시작했지만 이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림. 이러한 대안 조치들이 중국이 남중국해를 통한 해상무역 의존도를 줄이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낼지 여부는 불확실. 결과가 무엇이든, 남중국해는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의 도관 역할을 하는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국제항해에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는 점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음. 따라서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와 같은 주변 연안국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과 같은 역외 국가들도 지속적으로 남중국해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임
  
- 남중국해에 대한 역외 국가들의 관심은 또한 이 지역에 군사 및 해안 경비 시설이 상시적으로 또는 긴급 상황 시에 설치될 수 있음을 의미함. 미 해군은 남중국해에서의 지나친 영유권 주장, 특히 중국의 주장에 맞서, 2015년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을 포함하여 일상적 작전을 벌이고 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할 가능성이 더 큼. 미 해군은 2017년 6월에서 8월 중순까지 3개월이 안 되는 기간 동안 항행의 자유 작전을 세 차례 실시하여 중국을 불편하게 했음. 중국 국방당국은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국방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구실로 마찬가지로 활동을 암시. 이러한 작용, 반작용의 효과는 장래에는 무시될 수 없음. 특히 무역 문제와 북한의 호전성과 같은 수많은 쟁점들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악화되면서, 다른 영유권 주장국들도 또한 방위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미 해군을 제쳐 놓더라도 남중국해의 호주, 인도, 일본 군대 및 해안경비대가 상시적으로 존재함. 역외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에 “간섭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비판을 감안한다면,<sup>10)</sup>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조치로 인해 행동수칙은 궤도를 이탈할 것임

**행동수칙 체제는 중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이외의 다른 국가의 서명국 역할을 상정하지 않음. 그리고 이것이 문제를 다시 어렵게 만드는 것임**

**배신 지역으로  
간주하는 대만은  
독특한 국제적 지위로  
인해 행동수칙에 대한  
과거 협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함**

**어떤 형태로든  
궁극적으로 구체화될  
행동수칙은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역할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임**

## 5. 대만 — 잠재적 와일드 카드?

- 비 당사국이 관련된 문제에서 대만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음. 배신 지역으로 간주하는 대만은 독특한 국제적 지위로 인해 행동수칙에 대한 과거 협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함. 더구나 대만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대신 독자적 입장을 선호.<sup>11)</sup> 그러나 동시에, 인공 섬을 제외하면, 대만은 남사군도에서 가장 큰 자연 형성된 섬인 이투아바 섬(Itu Aba, 대만 측 명칭은 타이핑 다오섬)을 영유. 행동수칙 협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대만이 반드시 단독으로 자제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
- 이는 대만이 그간 이투아바 섬의 방위를 강화함으로써 남중국해의 군사기지화를 초래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 해안 경비청은 군대에서 넘겨받은 120mm 박격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긴급 사태 시 타이완 본토에서 이투아바 섬으로 155mm 곡사포를 신속히 배치할 수 있음.<sup>12)</sup> 대만 당국은 또한 다른 방법으로 이투아바 섬 방위를 강화했고, 일부 엘리트 정치인들은 해병대를 이 섬에 재배치하라고 요구하고 있음.<sup>13)</sup> 자위권의 이름으로, 그리고 대만이 행동수칙의 서명국이 아니라 구실로 취해지는 이러한 행위는 다른 영유권 주장국들의 대응 조치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음. 베트남이 차지하고 있는 나밋섬(Namyit Island)이 이투아바 섬에서 남쪽으로 30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임. 베트남은 대만의 이 지역 군사기지화 행동에 대해 수차례 항의<sup>14)</sup>

## 6. 앞에 놓인 길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론의 근거가 있음. 어떤 형태로든 궁극적으로 구체화될 행동수칙은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역할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임. 그러나 그들의 기본적인 의제는 여전히 다를 것임. 한편으로 아세안은 아시아 태평양 안보 구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보여지기를 원함.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과거행위로 인해 국제 언론을 통해 나쁜 평판을 얻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묘사되기를 원하고 있고 아세안과의 행동수칙 협상과정에서 분쟁에 대한 역외 간섭을 차단하고 싶어함. 따라서, 행동수칙은 어느 국가든—당사국이든 아니든—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허점투성이의 합의안이 될 것이라 예

측하는 것도 가능

- 군비 통제 역사는 행동수칙과 같은 기제가 지리적 범위뿐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의 범위도 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이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어느 불특정 해상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적, 전략적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국제해역인 남중국해임. 남중국해의 일부 영역만 선택적으로 수칙에 포함시키거나 협상당사자를 선택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 수칙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함

**군비 통제의 역사는  
행동수칙과 같은  
기제가 지리적 범위뿐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의 범위도 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주석

- 1) 제50회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공동성명, 아세안 사무국, 2017년 8월 6일.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asean.org/joint-communicue-50th-asean-foreign-ministers-meeting/>"(2017년 8월 15일 조회).
- 2) 남중국해 분쟁을 포함하여, 동남아시아의 안보와 지리적 문제를 장기간 관찰해 온 칼라일 썬어(Carlyle Thayer) 교수는 다른 관련 문제보다도 마닐라에서 행동수칙 기준을 다룬 아세안 주도 회의를 전후로 일련의 분석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다음을 참고할 것: Carlyle A. Thayer, "ASEAN-China: Framework of a COC," *Thayer Consultancy Background Brief*, August 6, 2017.
- 3) 2002년 11월 4일, 아세안 사무국의 남중국해에서의 당사국 행동선언은 다음에서 얻을 수 있다: [http://asean.org/?static\\_post=declaration-on-the-conduct-of-parties-in-the-south-china-sea-2](http://asean.org/?static_post=declaration-on-the-conduct-of-parties-in-the-south-china-sea-2)(2017년 8월 15일 조회).
- 4) 이러한 학문적 시각의 개요는 다음을 참조: "남중국해 행동수칙: 희망적 현실인가 아니면 가망없는 허위인가?(A South China Sea Code of Conduct: A hopeful reality or a hopeless falsity?)" *Maritime Issues*, 2017년 7월 28일. 다음에서 확인할 가능. <http://www.maritimeissues.com/expert-interview/a-south-china-sea-code-of-conduct-a-hopeful-reality-or-a-hopeless-falsity.html>(2017년 8월 15일 조회).
- 5) Rear Admiral J. R. Hill, *Arms Control at Sea*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89); Richard W. Fieldhouse and Shunji Taoka, *Superpowers at Sea: An Assessment of the Naval Arms Race, SIPRI Strategic Issue Papers*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Richard Fieldhouse (ed.), *Security at Sea: Naval Forces and Arms Control* (SIPRI Publications)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6) 필리핀 당국은 2017년 3월 중국이 스카버러 섬에 해안경비대를 계속해서 주둔시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Evelyn Macairan, “헤이그 판결 1년 후, 중국 선박 파나타그 섬 순시(China ships patrol Panatag, a year after Hague ruling),” *The Philippine Star*, July 13, 2017.
- 7) 중국은 이 섬에 이른바 “환경감시단”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중국 남중국해 분쟁 섬에 건축계획(China to build on disputed shoal in South China Sea),” *Reuters News*, March 18, 2017.
- 8) “초점: 국제사회는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국제문제화 반대 (Spotlight: Int’l community calls for peaceful solution to South China Sea issue, opposes internationalization),” 신화사 통신, 2016년 5월 9일.
- 9) 예를 들어 다음을 참고할 것: “How much trade transits the South China Sea?” *ChinaPower*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17).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chinapower.csis.org/much-trade-transits-south-china-sea/>(2017년 8월 15일 조회).
- 10) “중국, 아세안 협력은 남중국해 상황을 호전시킨다,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행동 수칙 협상에 필요치 않다: 중국 외무장관,” 신화통신, 2017년 8월 8일.
- 11) Tai Ya-chen and Lilian Wu,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협력불가: 대만(No Cooperation with China in South China Sea: Taiwan),” *Central News Agency English News*, 2016년 4월 4일.
- 12) Lo Tien-pin, “긴장고조로 이투아바 섬에 곡사포 설치(Escalation sees Itu Ana allocated howitzers),” *Taipei Times*, 2017년 7월 25일.
- 13) “국방부 이투아바 섬에 군대파병 요구에 직면(MND faces renewed calls to send troops to Itu Aba),” *Taipei Times*, 2016년 4월 4일.
- 14)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 베트남 외무부 대변인 Le Hai Bihn의 2016년 9월 23일 제10차 정례 기자회견 발언, 베트남 외교부. 다음에서 확인가능: [http://www.mofa.gov.vn/en/tt\\_baochi/nr140808202328/ns160923095658](http://www.mofa.gov.vn/en/tt_baochi/nr140808202328/ns160923095658)(2017년 8월 15일 조회).

## ❖ 저자 약력

## ■ 콜린 고 (Swee Lean Collin Koh)

싱가포르 난양공대의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의 국방전략연구소(IDSS) 연구원. 주요 연구분야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인도양, 태평양 지역의 해군 문제임. 싱가포르 군의 군사교육 및 연수와정을 지도했으며 연구와 교수활동 이외에도, AP통신, BBC, 블룸버그, 채널 뉴스아시아, 로이터통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스트레이트 타임스 등 지역 및 국제 매체에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지정학적 위기 자문활동을 벌이고 있음. 동남아시아의 해군 근대화를 주변의 인도양, 태평양 지역의 근대화와 비교한 그의 박사논문을 연장한 작업으로 인도양-태평양 지역의 18개국의 해군증강 및 해군구조, 국가정책론, 신뢰구축 및 협조 조치 그리고 해상 위협사건과 무력사용에 관한 정보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진행 중임.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술루/셀레비스해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삼자공동 해양, 항공 초계활동의 유지”(In for the Long Haul: Sustaining the INDOMALPHI Trilateral Maritime and Air Patrols in the Sulu/Celebes Seas) (2017년, Naval Forces지); “낙관주의의 이유?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 중국해에서의 해군활동의 일방적 억제”(Reasons for Optimism? China, Japan and Unilateral Naval Restraint in the East China Sea) (International Security in the Asia-Pacific: Transcending ASEAN towards Transitional Polycentrism)(2017년, 알란 정(Alan Chong) 편집); “아시아, 태평양 연안지역에서 사건의 예방과 억제; 해상의 예기치 않은 조우를 위한 수칙(CUES)의 형성, 확대 및 추가”(Incident Prevention and Mitigation in the Asia Pacific Littorals: Framing, Expanding, and Adding to CUES)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 연구보고서 시리즈(2017년)로 그레이엄 옹-웹(Graham Ong-Webb)과 버나드 미란다(Bernard Miranda)와 공동집필) 등 다수.

기획 및 감수: 기지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황지나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